

의안번호	제277호
의결연월일	2006.4.11

##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29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4. 4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4. 10

제130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

### 2. 제안설명요지(재무과장 : 고영세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입찰수수료 전면폐지
  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 관련 행정비용 감소
  -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감사원 및 행자부의 폐지 권고
- 수산업법 수수료 개정
  - 행정자치부의 수수료·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 및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의 개정

#### 나. 주요골자

- 입찰참가 신청수수료(10,000원/1건) 전면폐지  
[안]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(별표1)의  
<인가, 허가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> 중 2의 제1호 삭제

- 수산업에 관한 기타제증명 1건 개정(330원에서 500원으로)  
[안]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(별표1)의 <증명>중 14의 제1호 개정
- 농수산물관계 수수료 규정 11건 신설  
[안]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(별표1)의  
<인가, 허가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 등> 중 4의 제3~13호 신설

### 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정낙춘)

- 동 개정 조례안은 감사원에서 산업자원부 등 22개 기관에 대한 기업 불평 사항 실태감사시 지적된 전자입찰 실시에 따른 입찰 수수료 징수의 불합리한 사례를 폐지토록 권고한 내용의 반영과
- 농수산업 관련 인·허가 신고·신청·등록 등 수수료의 현실화 조치 계획에 따른 인상 조정과 일부 항목의 신설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짐.
- 다만 농수산물관계 인·허가 신고·신청·등록 등 수수료의 신설 11건은 지난 1998년 관련법인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개별법령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면서 징수수수료를 2002년까지 80% 수준으로 점진적(붙임 참고자료 활용 : 100~1,600원 → 2,400→5,700원) 현실화토록 시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현실화는 물론 관련 수수료 징수 근거조차 마련치 않고 당시 개별법령으로 정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.

## 【참고자료】

## 수산업에 관한 제증명 및 수수료 원가분석표 (안)

연번	수수료명	징수근거	채정연도	현요율(원)	원가분석액(원)	원가보상율(%)	추가보상요금(원)	개정수수료(안)
1	어업권(지분)이전 인가 신청	어업면허및어장에 관한규칙제22조2항	1994	1,000	6,759	14.8	5,759	5,400
2	어업권분할인가 신청	어업면허및어장에 관한규칙제23조1항	1994	1,000	6,759	14.8	5,759	5,400
3	어업권변경인가 신청	어업면허및어장에 관한규칙제24조1항	1994	1,000	5,752	17.4	4,752	4,600
4	어장시설물의 철거 의무면제 신청	어업면허및어장에 관한규칙제43조2항	1991	1,600	6,760	23.6	4,146	5,400
5	어업권 원부 열람신청	어업등록령제17조 제1항	1994	100	3,088	19.4	2,988	2,400
6	어업권 원부 등초본 교부신청	”	1994	600	3,088	19.4	2,488	2,400
7	내수면어업면허 신청	내수면어업법제6조	1976	1,000	9,591	10.4	8,591	7,600
8	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	내수면어업법 제13조	1991	300	7,138	4.2	6,838	5,700
9	내수면어업허가 신청	내수면어업법 제9조	1991	1,000	6,596	7.5	6,196	5,200
10	유해어법의 사용 허가신청	내수면어업법 제19조	신설	-	6,596	-	-	5,200
11	수산물가공업 등록 신청	수산물가공업의등록등 에관한규칙제3조1항	1991	1,600	6,138	26	4,538	4,900

※ 개정수수료 : 원가분석액의 80% 기준으로 산정 (개정)

**4. 질의·답변요지**

- 생략

**5. 토론요지**

- 없음

**6. 심사결과**

- 원안가결

**7. 소수의견요지**

- 없음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**

- 없음